

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금 용 감 독 원

우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전화 02-3145-7511 / 전송 02-3145-7684
처리부서 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팀장 황성관 담당자 수석검사역 정제용

문서번호 손보기획 -00025

시행일자 2013.01.22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감사, 준법감시인, 손해사정업무 담당 임원

사본수신 사본수신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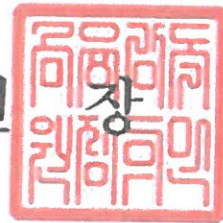
제 목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외부의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면서 동 업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징구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상 규정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관행이 지속될 경우 손해사정업체가 피보험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손해사정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해당업무가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업무처리기준 등에 대한 점검 및 임·직원 교육 실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원의 검사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금 용 감 독 원



수 신 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약사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코리아리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한국지점 대표이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한국지점 대표이사,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서울지점 지점장, 제너럴재보험주식회사 서울지점 지점장, 민헨재보험주식회사 한국지점 지점장, 스위스재보험 지점장,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한국지점 대표이사,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에르고다음다이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100-77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 담당: 이한웅 대리 / 02-3455-3393

문서번호 : 롯데손보 2014 - 109 호

2014. 10.29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 손보기획 - 00025(2013.01.22)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 및 금융위(2014.10) 『금융규제 개혁방안』 반복 지적 사항 최소화와 관련됩니다.
3. 보험업법 제 188 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업무 위탁 수행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사례(합의서 징구 행위 등)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4.11.7 일까지 (rey7748@lotteins.co.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금융감독원 공문(손보기획 - 00025) 1부.
2. 손해사정업무 위탁관련 유의사항 1부. 끝.

대표이사 김 현 수

수신처 : 메이저손해사정 대표이사, 리카온특수대물 대표이사, 프라임특수대물 대표이사, AMP 자동차손해사정 대표이사, MK 자동차 대표이사, FM 자동차손해사정 대표이사, 스피드손해사정 대표이사, 부흥대물손해사정 대표이사, 링컨손해사정 대표이사, 머큐리손해사정 대표이사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유의사항

1. 목 적

- 손해사정업무의 외부 위탁시 합의서 징구에 대한 문제 대두
-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된 자체 업무처리 기준 수립
- 손해사정업체의 무리한 합의서 징구 및 피보험자의 권익침해 근절

2. 관련법규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3.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유의사항

가. 손해사정업무 중 발생하는 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다. 당사 소속 임직원은 회사(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합의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능하다. 위탁업체는 '합의' 과정에 있어 사자(使者)일 뿐 주체가 될 수 없음

4. 적용 대상 및 범위

가. 적용 대상자

- (1) 보상직원 → 적용대상 제외 (합의 可)
- (2) 손해사정업체 → 적용대상 (합의 不可)

나. 적용 범위

- 당사 청구건 중 위탁업체를 통해 손해사정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전건
- 상기 건 중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되는 모든 건